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2020
학생 봉사활동
운영 자료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융합교육정책과

목차

1.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

2. 2020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7

Ⅰ. 추진 배경 및 추진 근거 ····· 12
Ⅱ. 추진 방향 ····· 13
Ⅲ. 세부 운영 ····· 14
부 록.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안내 ····· 37

3. 학생봉사활동 이것이 궁금해요 ····· 41

Ⅰ. 학생봉사활동이란? ····· 43
Ⅱ.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46
Ⅲ.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48
Ⅳ.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 58

1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6.] [경기도조례 제6317호, 2019. 8. 6., 제정]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031-820-07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중 중학교 · 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봉사활동”이란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역사회 ·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명칭)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기능)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학생봉사활동 방향 수립 및 학생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
2.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교육
4.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
5.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 학생봉사활동 인정여부 및 범위 등 봉사활동 인정 기준

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생봉사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위촉할 수 있다.
⑤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교별로 설치 ·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학교 등 개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로 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상기관, 지역사회 여건, 학교교육과정, 활동 내용 등 학년별 단계에 맞는 학생봉사활동 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평가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로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의제,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학교 봉사활동 계획, 봉사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봉사정신 함양교육 등) 학교장은 학생 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정신 함양교육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관계 구축) 학교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활동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학교장은 지역사회 및 학부모 등에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6317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기존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본다.

메모장

2

2020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Ⅰ. 추진 배경 및 추진 근거

Ⅱ. 추진 방향

Ⅲ. 세부 운영

부록.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안내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2020 학생 봉사활동 주요 내용 변경 비교표

구 분	쪽수	변경 전(2019학년도)	변경 후(2020학년도)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 운영에 관한 전체적 내용 변경	※ 2019.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 내용 수정
학교교육과정 내 (정규교육과정) 봉사시간 변경	6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한으로 편성(학년도별 5시간 이내 편성 권장)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한으로 편성**(학년도별 10시간 이내 편성 권장)**
경기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10	○ 경기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 구성 :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봉사활동 담당 장학사, 초·중·고 봉사활동 담당교사	○ 경기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 구성 : 경기도교육청 봉사활동 담당부서 과장, 장학관, 장학사 및 교육지원청 봉사활동 담당 장학사, 초·중·고 봉사활동 담당교사 등 10인 이내 구성
물품 및 현금기부	14	7. 물품 및 현금기부 - 인정 불가 -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인정 불가 - 모자 뜨기, 비누 만들기 등을 한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 다만'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만 인정하되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7. 물품 및 현금기부 -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구 분	쪽수	변경 전(2019학년도)	변경 후(2020학년도)
물품 및 현금기부	14	(프로그램계획안, 활동 결과물 등)를 제출해야 함. 학교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인 후 인정 여부 결정	-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 계획안 등)가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을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시간만을 인정함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기부금 형태, 교통비·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형태)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14	8.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다만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는 허용 가능, 학교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 후 인정 여부 결정	8.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형태,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없음)
신입생의 입학식 전 봉사활동과 졸업생의 졸업식 후 봉사활동 인정	15	- 2019학년도부터 졸업생의 졸업식 이후 2월말까지의 봉사실적 인정 (2019.2.발송한 봉사 계획에는 미인정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근거로 2019학년도부터 졸업생의 졸업식 이후 2월말까지의 봉사실적을 인정한다는 수정공문 시행 - 2019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수정사항 및 조례 제정 알림 공문 참조[융합교육정책과-15915(2019.12.10.)호] 참조	12.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 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구 분	쪽수	변경 전(2019학년도)	변경 후(2020학년도)
			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번역봉사	16	18. 번 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8. 번 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음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I 추진 배경 및 추진 근거

1. 추진 배경

추진 배경

-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활동 영역의 다양화·내실화 추진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필요
-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2022, 행정안전부)과 연계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필요

2. 추진 근거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8~2022)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0)
-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교육부, 2016~2020)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8.)

II • 추진 방향

목 표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실 행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운영

추진 방향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강화**

학생의 진로와 흥미, 특기를 활용한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일관성 있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절차, 기본 인정 기준 및 내용별 인정(예시) 안내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지역협의체 협력 체제 구축 및 봉사 프로그램 발굴·보급

Ⅲ 세부 운영

1.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가. 단위 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 계획 수립(학기 중에 추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관, 즉 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31곳 및 VMS 기초지역관리본부 25곳과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기관 파악 후 적극 안내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양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타 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관련하여 협조 및 요청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 여부 검토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봉사활동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봉사활동 사전 교육, 사후 확인 강화**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기록 및 지속적인 관리 필요
-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 예방

> 사례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학생 · 학부모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탑재된 봉사활동은 무조건 인정된다고 생각함
>
> 사례2.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경우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하나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인정 불가한 봉사활동을 인정함

- 교사들이 봉사활동의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공유하고,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비교육적인 봉사활동 방지**
-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장소, 내용,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ㅇ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학생의 진로,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전 생애 봉사활동의 기반 마련

ㅇ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담당교사가 반드시 임장 지도하여 봉사활동의 취지 및 안전에 유의

ㅇ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계획서 **승인 시 기관, 내용, 영역, 안전 등에 유의**하여 검토한 후 승인

나.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교육 실시

ㅇ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

※ 기본 방향(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

ㅇ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학기 초 및 방학 직전 등 연중 수시로 교육 실시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2시간 이내)**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외에,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인정 불가. 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는 **1시간** 인정 가능

ㅇ 학생의 진로와 흥미를 연계한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권장

- 시간 확보를 위한 단순 봉사활동 및 일회성 봉사활동 지양

ㅇ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

-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및 학급, 동아리, 가족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확대

다.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

ㅇ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6317호. 2019.8.6.공포)

ㅇ 구성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부장은 당연직으로 함

- 위촉직 위원은 학생봉사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할 수 있음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교별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단, 소규모학교 등 개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 운영할 수 있음

○ 기능
- 학교 학생봉사활동 방향 수립 및 학생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교육
-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
-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 학생봉사활동 인정여부 및 범위 등 봉사활동 인정 기준
-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음

라. 교사 · 학생 · 학부모 대상으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년 초에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자세히 안내하여 학생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초 학교봉사활동 소양교육 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총회 시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반드시 안내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참고자료 3.> 학생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통일된 인정 기준안 안내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

가.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확인 강화

- 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및 VMS 기초지역관리본부와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기관 파악,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안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사전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

나.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해야 봉사활동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평일 인정 가능 시간 :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한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및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	×	○					×	×	×	×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하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3.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영역(3개) 10쪽 <참고자료1>**

-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내봉사활동을 봉사활동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봉사활동영역으로는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3가지 영역**이며 학교에서는 내용에 따라 학교봉사활동을 운영(예: 급식도우미(이웃(친구)돕기활동), 학교숲쓰레기줍기(환경보호활동), 교내 각종 캠페인활동(캠페인활동) 등)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일상적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학교별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

-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한으로 편성**(학년도별 10시간 이내 편성 권장)**

○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10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것을 권장.** 봉사활동 **종류의 예: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정보화기기도우미, 도서실도우미 활동 등)**

- 종류별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예: A학생이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도서실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B학생이 1년 동안 급식도우미를 계속 하는 경우 등 지양)

- 취지: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소수의 특정한 학생이 독점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봉사활동 절차

봉사활동 계획 수립	➜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	➜	봉사자 사전교육 (태도 및 방법, 관련 지식 교육 역할 분담)	➜	실 행	➜	반성 및 평가 (인정 및 격려)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차기 계획에 반영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

○ 봉사활동 수행절차(예시)

단 계	활동 내용(예시)
(1) 사전 교육	•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 유사 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3) 실천	•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2) 영역별 지침 - (다) 봉사활동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기준(예시)

기 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나. 평가 - (1) 학생 평가 - (나)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나.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생]		[학생]		[학교]		[학교]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봉사활동 **실행**	➜	봉사활동확인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전송**	➜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신청→실행→전송→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기관과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실적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
-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전송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한 내용 캡쳐본과 함께 봉사활동 확인서로 봉사활동을 인정**
- 학생이 학년말(2월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학생에게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을 증빙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헌혈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

다.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함

○ **구성원별 유형**

- **개인형** :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모둠형** : 진로나 흥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 · 고등학교 권장)
- **융합형** :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연합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장소, 내용, 대상 등을 결정하여 장기간 함께 실시하는 봉사활동(초등학교 권장)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 **기간** : 계획서 및 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 기간은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
- **기관 및 장소** :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프로젝트형 봉사기간 동안 동일기관 · 연계기관 및 장소에서 활동
- **활동 내용** : 학생의 진로 및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되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함
- **절차**

계획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및 활용 단계
• 주제선정 - 목표수립 - 자원 탐색 - 활동 계획 수립 - 장소 및 대상 섭외 - 역량 계발	➜	• 실행과 기록 - 반성과 점검 • 안전사고 유의	➜	• 활동정리 - 포트폴리오 작성 - 결과 및 활용(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평가** : 연말(학기말)에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봉사활동계획서, 실적(포트폴리오) 등을 검토
- **기타사항**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추진 시 인정 기준, 가능 기관, 절차 등 모든 사항은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준하여 실시
·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는 <참고자료 4> 예시 서식 참고**

라. 교육청 및 단위학교 협조사항

》 도교육청

ㅇ 경기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 구성 : 경기도교육청 봉사활동 담당부서 과장, 장학관, 장학사 및 교육지원청 봉사활동 담당 장학사, 초·중·고 봉사활동 담당교사 등 10인 이내 구성
- 역할 : 경기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경기도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교육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및 활동 상황 검토 및 협의

ㅇ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담당자 협의회
- 구성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의 경기도 담당자
- 역할 :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학생 대상 봉사기관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적합 여부 판단, 봉사활동 실적 기록 방법 교육,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를 통해 학생 봉사활동 발전 방안 모색 등

ㅇ 단위학교 학생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 학생주도 봉사활동 실천사례 교육감 표창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학생과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봉사, 지역사회 연계 봉사, 공유하고 일반화할만한 특별 봉사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지원청

ㅇ **지역 내 봉사활동 유관기관**(1365자원봉사포털 시군자원봉사센터 31곳 및 VMS 기초지역관리본부 25곳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봉사활동 지원 및 민원사례 발생 사전 방지

ㅇ **학교 봉사활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학기초에 실시하여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안내 철저(연수 결과 보고)

ㅇ 관내 신설교가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추가 안내

ㅇ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 학 교

ㅇ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학교별 봉사활동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학기 중에 추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학년 초 교사·학생·학부모에게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연수 및 안내 철저**

- 연수 : 교사는 학년 초 연수 시, 학생은 학년 초 학교봉사활동 소양교육 시, 학부모는 학부모총회 시 구체적으로 실시
- 안내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준 및 양식 탑재, 수시 안내물 홍보 게시

○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협의하여 최종 결정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을 단위학교 봉사활동 추진 계획에 수립하여 추진 권장

· 학교교육계획에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운영
예)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우리학교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발굴하고 봉사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개인 계획에 의한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홍보 강화

○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순한 봉사활동을 최소화하여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권장

○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봉사활동의 사전 · 사후 확인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지속적 관리

○ 봉사활동계획서 승인 및 확인서 발급 시 허위 및 편법적인 봉사활동으로 비교육적인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마.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기관별 운영 일정

내 용	일 정	담당기관
•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 2020.02.	도교육청
•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알림	- 2020.02.	도교육청
• 학교별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 2020.03.	학교
• 교육지원청 봉사활동 담당자 및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담당자 연수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 시기 미정	도교육청
• 학교 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 연수 시기는 지역에서 결정(학년초)	교육지원청
• 학교별 연수(교사·학생·학부모 대상)	- 학기초 실시	학교
• 교육지원청 지역내 봉사활동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현황 보고	- 2020.04.28.(화),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교육지원청
• 학교 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결과 보고	- 2020.04.28.(화),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교육지원청
• 봉사활동 운영	- 2020.03.01. ~ 2021.02. 28.	학교
• 경기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봉사활동 운영 협의	- 2020년 수시	도교육청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실무 담당자 협의	- 2020년 수시	도교육청
• 평가 및 환류	- 2020.12.	도교육청, 학교, 교육지원청

참고자료 1 : 2015 개정교육과정의 봉사활동 내용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1) 공통 지침
②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③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영역별 지침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③ 교외 봉사활동은 가급적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④ 봉사활동은 학교나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초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⑥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내 봉사활동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외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중·고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사전 교육과 사후 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 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 친구돕기활동 -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 지역사회활동 -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 환경정화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 자연보호활동 -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참고자료 2 :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 발생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apos, &gt(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에 준해 계획서 제출은 생략

3.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6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3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2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다만 별도의 봉사활동계획에 의해 동아리활동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였다면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리더십 배양과정의 교육과정상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리더십 배양과정 참가 내용은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

4.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5. 민간기관 · 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 · 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6.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 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소양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7. 물품 및 현금기부

-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함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 계획안 등)가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을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시간만을 인정함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기부금 형태, 교통비·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형태)

8.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 (기부금 형태,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없음)

9. 학교에서의 일상 활동

- 교실 및 특별실 청소, 환경미화 등 일상적 학교활동은 인정 불가
- 다만,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학교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10시간 이내 권장,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10시간 이내로 편성 권장

10.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11. 교외체험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12.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인정 불가
- 아래의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14.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의 봉사활동

- 재학생의(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5.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단 동일 기관의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16.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7.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8. 번　　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음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9.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20. 학생이 실무 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 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21. 헌　　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연(학년도)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2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자치회의, 자치법정, 모의의회, 토론회, 학생기자활동, 평가단 등)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사전 안전교육 등)은 인정 가능)

23.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소양교육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2시간 이내)**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외에,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인정 불가 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꼭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1시간 인정 가능**

24. 안전 신고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호

25.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 **봉사시간 미인정**

참고자료 3 : 학생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작성 시 유의사항 부분 참고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경기도교육청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중학생의 경우 학생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 지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 **이 외 봉사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학교별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안내 바랍니다.**

※ 가정으로 통신과 함께 학교홈페이지 탑재 요망

※ 위 내용은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교상황에 적합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시고, 봉사활동에 관한 세부내용은 학년초 학생 대상 소양교육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 :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서식1)

개인 봉사활동계획서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인적 사항	○○초 · 중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총 (　　)시간					
주관 기관						
활동 장소						
봉사 영역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					
활동 내용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 ○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서식2)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단체봉사 구분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 학교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　　)		
인적 사항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성명 : ○○○ 외　명(총　명)		
봉사활동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봉사활동 기관	○○초 · 중 · 고등학교	기관 연락처	
봉사영역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		
활동 장소	○○초 · 중 · 고등학교		
활동 내용			

봉사활동 참여자 명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단체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　성명　　(인)

확인기관명 : ○ ○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은 위 확인서 발급으로 처리하세요.

(서식3)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개 인 형)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초 · 중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총 (　　)시간								
주관 기관									
봉사 장소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 ○ 초· 중 · 고등학교장 귀하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서식3-1)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모둠형·융합형)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학 번	성 명	비 고	학 번	성 명	비 고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총 (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 ○ 중 · 고등학교장 귀하

※ 모둠형 또는 융합형에 따라 인적사항 비고란에는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로 표시하세요.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서식4)

헌혈 학부모동의서 · 사후 확인서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인적 사항	○○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헌혈 일시	20　년　　월　　일, 총 (　　)시간					
헌혈 주관 기관						
봉사 영역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헌혈(전혈) (　　) / 헌혈(성분헌혈) (　　)					

위와 같이 자녀의 헌혈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성 명 :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서식5)

■ (　　) 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회의록(예시)

○○○○학교

회의일시	20 . 03. ○○. 14:00	회 의 참석자	위 원 장 : 교감 ○○○ 부위원장 : ○○○ 위원 : 000, 000, 000, 000, 000, 000
회의장소			
회의안건	20 학년도 1학기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심의 및 의결		
			기록 : ○○○
회 의 내 용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결내용			

부 록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안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참고사항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운 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 관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1365.go.kr	http://www.vms.or.kr	http://dovol.youth.go.kr
경기도 내 센터 구성	경기도자원봉사센터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25개 기초지역관리본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군 센터 없음)
봉사활동 주영역	공공, 공익 관련	사회복지 관련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청소년 대상 (작은도서관, 박물관 등)
확인서 명칭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
확인서에 표현된 봉사주관기관명	봉사실적등록기관	관리센터[수요처]	현재는 없음. 수정 요청 중

※ 청소년활동진흥센터(DOVOL)는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에 흡수
→ 'e-청소년' 사이트 접속하면 '자원봉사 DOVOL'과 연계됨

(e-청소년 : 전국 2,300여개 공공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정보, 국제교류 정보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종합사이트)

◎ 봉사활동 실적의 나이스 연계 시 봉사활동 주관기관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연계하면 주관기관명은 모두'~센터'로 입력됨
- 개인이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면 기관장명으로 출력되고(예 : ~협회장), 봉사기관이나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출력해 주면 기관명으로 출력됨(예 : ~협회)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는 봉사활동에 대해 인증만 할 경우도 있고 봉사활동 기관으로서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별도의 봉사기관이 있다면 봉사활동주관기관명에 '○○시자원봉사센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아니라 해당 봉사기관명이 입력되어야 함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기관 교육 시 봉사활동 내용 및 기관명 입력에 대한 정확한 전달 필요

※ 현재 DOVOL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기관명(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으로 발급되고 봉사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별 봉사활동확인서 양식이 다름. 그에 대해 교사, 교육청 담당자, 실적연계사이트 담당자가 숙지하고 민원 발생 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함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별 봉사활동확인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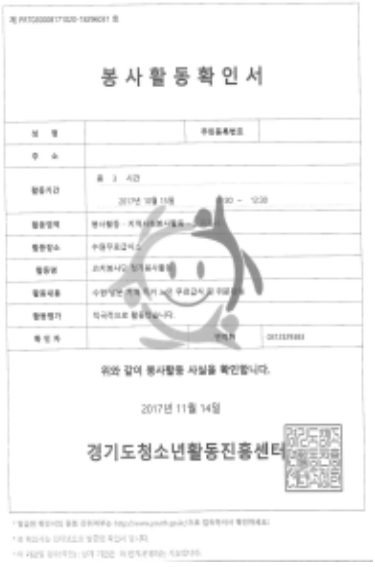

DOVOL 봉사활동확인서
(봉사주관기관 표시 없고
센터로 발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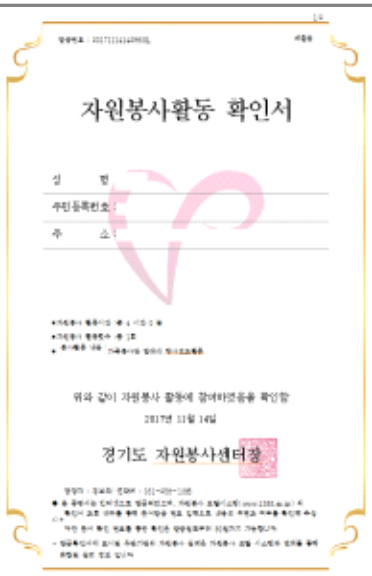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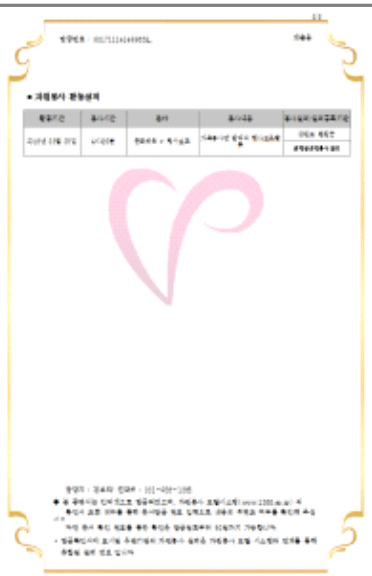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활동확인서
(1쪽에는 봉사활동 시간, 횟수, 내용이,
2쪽에는 봉사주관기관이 '봉사실적등록기관'란에 표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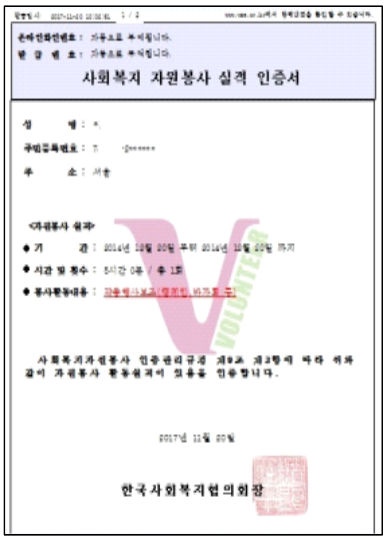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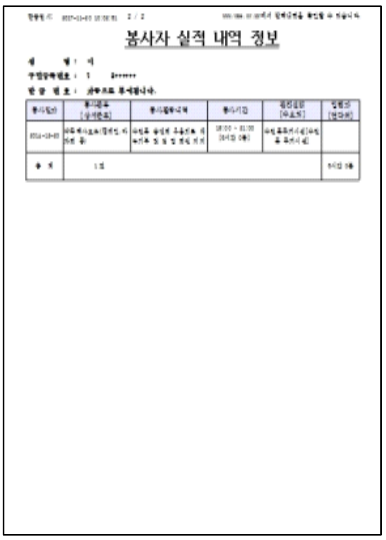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1쪽에는 봉사활동 시간, 횟수, 내용이, 2쪽에는 봉사주관기관이'관리센터[수요처]'란의
[수요처]에 표기되어 있음

◎ 경기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봉사활동 관련 문의
- 1365자원봉사포털(경기도자원봉사센터) 031-256-1365
- VMS(경기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대표번호 031-213-8551
- DOVOL(경기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1-232-9383

◎ 1365자원봉사포털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 연락처

순	지 역 센 터 명	전 화 번 호
1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031) 253-1365
2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031) 757-6226~8
3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031) 906-1365
4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032) 625-6501
5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031) 335-7757
6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031) 411-1365
7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031) 8045-2487
8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595-1365
9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031) 850-5745~7
10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031) 8024-2671~8
11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031) 312-7792
12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031) 8059-5680~2
13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02) 2687-1365
14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941-8212
15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031) 394-1365, 390-0217
16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798-1365, 768-1365
17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031) 998-1365
18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031) 633-1365
19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031) 565-1365
20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843-1365
21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031) 674-1365
22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031) 538-2417~9
23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031) 372-1365
24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031) 790-6820
25	의왕시 자원봉사센터	031) 454-1365
26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031) 885-1365
27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031) 857-9961
28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031) 774-6800
29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02) 502(503)-2238
30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031) 581-1365
31	연천군 자원봉사센터	031) 834-1365

◎VMS 25개 기초지역관리본부 연락처

연번	지 역	전 화 번 호
1	고양지역관리본부	031-922-5784
2	광명지역관리본부	02-2687-1091
3	광주지역관리본부	031-798-8808
4	김포지역관리본부	031-996-0094
5	남양주지역관리본부	031-563-0365
6	동두천지역관리본부	031-864-4769
7	부천지역관리본부	032-662-7713
8	성남지역관리본부	031-756-3579
9	수원지역관리본부	031-253-2310
10	시흥지역관리본부	031-404-4347
11	안산지역관리본부	031-401-6472
12	안성지역관리본부	031-675-7676
13	안양지역관리본부	031-446-4065
14	양주지역관리본부	031-857-7973
15	양평지역관리본부	031-775-5995
16	여주지역관리본부	031-883-3304
17	오산지역관리본부	031-374-4569
18	용인지역관리본부	031-286-7918
19	의정부지역관리본부	031-852-4540
20	이천지역관리본부	031-638-4427
21	파주지역관리본부	031-941-6340
22	평택지역관리본부	031-653-5020
23	포천지역관리본부	031-531-0268
24	하남지역관리본부	031-795-4686
25	화성지역관리본부	031-366-4023

메모장

3

학생봉사활동 이것이 궁금해요

Ⅰ. 학생봉사활동이란?

Ⅱ.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Ⅲ.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Ⅳ.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학생봉사활동 이것이 궁금해요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담당자 협의회
경기도교육청봉사활동추진위원회

I 학생봉사활동이란?

Q&A 1.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학생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됩니다.

- 학생봉사활동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1. 학생의 봉사활동의 취지와 규정(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단위학교 계획, 안전 등)에 부합되고
  2. 인정 가능한 기관(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Q&A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단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단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ㆍ의료ㆍ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2.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3.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입니다.

  ※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의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합니다.

Q&A 3. 봉사활동실적이 의심되는데도 확인서만 보고 그대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나요?

-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실적이 의심되는 경우는 담임교사 또는 봉사활동 담당교사가 해당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가 어려울 경우는「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학생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도를 해야 합니다.

Q&A 4. 학생봉사활동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얼마인가요?

- 하루 8시간 이내로 인정합니다.
  - 평일은 수업시간에 따라 수업이 7교시면 1시간, 수업이 6교시면 2시간, 수업이 5교시면 3시간, 수업이 4교시면 4시간 인정, 휴업일(토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인 경우에는 8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한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Q&A 5.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일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어 봉사활동 인정이 어려울 경우에 판단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을 위반하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Q&A 6.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 시간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위한 왕복 이동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가능합니다.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및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	×	○					×	×	×	×

Q&A 7. 담임(담당)교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에 관하여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학교 내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학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봉사활동과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자율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의 결재는 학교별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한 결재를 할 수 있으며봉사활동확인서의 양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Q&A 8.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봉사활동도 왜 봉사활동확인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봉사활동을 최종 기록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승인과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은 계획에 대한 승인이며, 결석한 날은 누가기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출석부(출석상황) 등은 직접적인 봉사활동 확인서류가 아니며 관련서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기록을 위해 봉사 결과에 대한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Q&A 9. 봉사활동에서 1시간은 몇 분을 의미하나요?

- 봉사활동 시간 계산을 할 때 1시간은 정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으로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외 수업시간외 교내봉사활동, 교외 봉사활동은 60분을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Q&A 10. 봉사활동 확인서의 확인란에 해당 기관(단체)의 직인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담당자의 확인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봉사활동 확인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기관(단체)의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봉사활동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 후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을 추가 날인하여 조치합니다.

Q&A 11.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 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은 인정이 가능한가요?

-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학식 이전과 졸업식 이후의 학교장 승인 관련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II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가. 정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Q&A 12. 봉사활동 평가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학생봉사활동은 계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봉사학습 과정으로서의 활동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실행 후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기 활동에 대한 환류를 위한 평가활동은 1시간 내외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A 13.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 사유(경조사, 천재지변, 출석인정, 질병, 미인정 · 기타결석, 조퇴 등)로 불참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에 불참한 학생의 출결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기간 중 봉사활동이 실시되었을 때, 학교에 등교한 경우, 출석은 인정하지만 봉사활동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Q&A 14.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중 학생봉사활동을 교내 · 외 환경정화활동 내용으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 편성 가능합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학교 봉사활동 계획에 의해 실시된 활동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Q&A 15. 동아리활동 부서에서 동아리활동 시간에 실시한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Q&A 16. 징계 관련 학생 선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생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보호처분 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나. 수업시간외 교내 봉사활동

Q&A 17. 학교행사(체육대회, 축제, 소풍과 수학여행 등의 현장 체험학습) 후의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해도 되나요?

- 학교행사 계획에 봉사활동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교육과정 상 봉사활동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봉사활동)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교행사 후 단순 자기 주변 정리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Q&A 18.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발급 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한 학생 봉사활동은 인정됩니다. 다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된 경우 청소년 단체 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Q&A 19. 자치회의, 자치법정 등 각종 회의 참석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 참석 등은 인정할 수 없으며, 모의의회, 토론회,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영역 중 자치활동에 해당합니다.

Q&A 20.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 축제, 체육대회 행사 준비를 위해 활동한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행사에서의 봉사 프로그램을 연간 봉사활동 계획으로 수립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에는 구체적인 활동 시간과 활동 내용, 모집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른 영역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Q&A 2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단체)에서 교외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하여야 하나요?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은 해당 봉사활동을 주관한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관하고 장소가 교외인 봉사활동 확인서는 학교장이 발급을 하고,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지만 주관기관이 학교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Ⅲ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가. 봉사활동 기관

Q&A 22.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경로당 등에서 실시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영리기관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부녀회와 노인정 등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이 비영리기관(단체)이며,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활동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Q&A 23. 사설기관(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사설기관(단체)의 봉사활동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설기관(단체)이 비영리기관(단체)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만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회사, 마트, 카페 등)에서 실시하는 활동(봉사활동 포함)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A 24. 종교 단체에서의 활동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비종파성에 따라 종교 단체(교회나 사찰 등)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실시하는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종교 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Q&A 25. 사설 어린이집 또는 사설 유치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인정할 수 있나요?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봉사활동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인정할 수 없음)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에 의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인정합니다.

Q&A 26. 병원(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포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병원에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병원 내에서 봉사활동을 관리하는 병원)

- 노인요양병원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가능하며, 개인병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노인요양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 전반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만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이 가능한 병원이라 할지라도 활동 내용, 안전 등이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합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학생봉사활동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안내, 환자 위문 활동 등 학생봉사활동 취지에 맞는 활동은 인정 가능)

Q&A 27. 학생이 개인 또는 모둠으로 봉사활동을 프로젝트로 기획한 경우 학생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수업시간외 봉사활동으로 개인 또는 모둠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 하에 운영되었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학생 주도 봉사활동 길잡이(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참고하시기 바람)

Q&A 28. 번역 봉사가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려면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당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합니다.
-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A 29. 각종 협회(체육, 문화, 예술 등)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비영리법인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협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행사 등에 단순 참여가 아닌, 행사를 지원하는 활동 등 봉사활동 취지에 맞는 활동이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속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등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Q&A 30. 학교 외의 장소(지역 공부방 등)에서 학습 멘토로 활동하였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비영리 공부방(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등에서 활동한 학습 멘토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 공부방(독서실 등)은 인정할 수 없음))

Q&A 31. 작은 도서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작은도서관으로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약칭:작은도서관법)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7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Q&A 32. 소규모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실시한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하여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Q&A 33. 공익목적의 벼룩시장에서 활동한 내용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한 벼룩시장에서 질서유지, 행사 보조 등 운영에 참여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으며, 물건을 사는 등의 단순 참여활동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물품기부, 기부금 지원 등을 전제로 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벼룩시장에 판매할 물건을 기부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판매물품을 가지고 와 판매 후 수익금을 기부한 것 등)

Q&A 34. 장애인 복지 관련 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이 있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인정되는 기관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Q&A 35.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실시한 활동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음)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업조직인 협동조합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 구분하여 봉사활동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Q&A 36.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개인별 확인서가 아닌 공문으로 발송한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단체장)의 직인을 받아 발급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문 자체가 기관장(단체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A 37.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위탁기관에서 보내 온 각종 비교과 영역은 위탁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실적도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Q&A 38. 초 · 중 · 고 · 대학교(사립학교 포함)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대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사전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공개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나. 봉사활동 내용

Q&A 39. 부적절하게 인정될 수 있는 학생봉사활동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부적절하게 인정된 학생 봉사활동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②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③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④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⑤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⑥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⑦ 인구조사 참여
  ⑧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⑨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⑩ 운동경기、공연 관람
  ⑪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⑫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⑬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자치회의, 자치법정, 모의의회, 토론회, 학생기자활동, 평가단 등)
  ⑭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사전 안전교육 등)은 인정 가능)

Q&A 40.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단순 기부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 계획안 등)가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을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시간만을 인정합니다.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기부금 형태, 교통비・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형태)

Q&A 41.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전 사전교육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사전교육 내용이 실제 봉사활동과 직접 연결될 때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사전교육 내용이 실제 봉사활동에 직접 연결될 때 1시간 범위내에서 인정

- 학생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행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과도한 사전교육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Q&A 42. 평일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공공기관(교육기관)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일 수업이 6교시인 경우는 2시간, 7교시인 경우는 1시간 등과 같이 인정할 수 있음).

Q&A 43.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끝난 후(학년 말 방학)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인정할 수 있나요?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이므로 봄방학 등의 학년말 학생봉사활동 실적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학년도에 기재가 가능하면 기재하고, 해당 학년도에 기재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 학년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는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VMS, Dovol 등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의미합니다.

Q&A 44.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실적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기부금 형태,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없음).

Q&A 45. 설문조사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단순 설문조사 참여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A 46. 실적연계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활동도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실적연계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DOVOL(www.youth.go.kr), VMS(www.vms.or.kr))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의 경우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해 연도 시도교육청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품이나 재료 구입 후 무엇을 제작하여 기부하는 활동, 활동비・후원금・기부금 등 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하는 활동, 단순 체험・관람 프로그램,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 등 학생 봉사활동의 취지와 규정에 어긋나는 활동은 실적연계사이트를 통해 나이스 전송 되었을지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적연계사이트 이용 시 사전에 담임(담당)교사 등과 지도 및 상담을 통하여 봉사활동 실적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를 해야 합니다.

Q&A 47. 모발 기증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Q&A 48. 해외 봉사 가기 전 국내에서 사전 봉사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국내 활동(교육)을 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 사후 교육과 활동 등은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A 49. 헌혈 활동의 경우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헌혈 활동 후 발급되는 확인서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헌혈의 경우는 학부모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학교 외(헌혈의 집, 헌혈카페 등)에서 학생이 헌혈 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학부모의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위학교의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사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A 50. 중학생도 헌혈 봉사가 가능하나요?

-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전혈과 성분헌혈 모두 포함하여 연 3회(학년도)의 범위 내에서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헌혈은 1회당 4시간 봉사활동으로 인정됩니다.

Q&A 51. 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헌혈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학생 봉사활동 시간제한(1일 8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며, 4시간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Q&A 52. 봉사활동 실비보상(교통비 8천원 등)이 있는 활동을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봉사활동 중 식사를 제공 받은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받은 경우는 인정할 수 없음)

Q&A 53. 온라인 활동(사이버 홍보단 등)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활동을 했을 경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다. 봉사인정 시간

Q&A 54.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요?

-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 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실천에 참고용으로 사용합니다.
- 학생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시간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의 발육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간 인정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권장 시간 이내 실시하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 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Q&A 55. 기말고사 기간에 시간표가 4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3시간 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있나요?

- 학생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수업과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간표(나이스 출결 시수)에 4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오후에 실시한 개인계획에 의한 3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A 56. 평일 수업시수가 7교시인데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확인서 봉사 시간이 2시간인 경우 2시간 모두 인정할 수 있나요?

- 2시간 중 1시간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이므로 1시간으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Q&A 57. 미인정결석 기간 중 휴업일(토 · 일요일 등)에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가요?

-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미인정결석 기간 중이라도 휴업일(토 · 일요일 등)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Ⅳ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Q&A 58. 해외 봉사활동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나요?

- 기재할 수 없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Q&A 59. 봉사활동실적 시간 기재에서 분 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봉사활동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합니다. 단,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에 합산 가능합니다.

예) 1. 2020.3.22. ○○도서관 서가 정리 2시간 30분으로 연계되었을 때
2020.3.22. (개인)○○도서관 서가 정리 2시간으로 입력
2. 2020.5.23. 환경보전협회 환경기본교육. 환경봉사활동 3시간 40분
2020.5.24. 환경보전협회 하천 정화활동 및 수생식물식재활동 2시간 30분으로 연계되었을 때는,
2020.5.23. ~ 2020.5.24. (개인)환경보전협회 환경기본교육, 환경봉사활동(하천 정화활동 및 수생식물 식재활동 등) 6시간으로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Q&A 60.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VMS)에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 중 봉사활동 기관(단체)이나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영역-기타, 기관-연계기관 또는 관리센터로 기재됨)

-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VMS)에서 전송된 원본자료는 수정할 수 없으나, 자료 확인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때 (담임)교사가 수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후 내용을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Q&A 61. 이전 학년도의 봉사활동 실적을 정정할 수 있나요?

- 객관적인 증빙자료(봉사활동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자료의 정정에 따름

Q&A 62.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보관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학기 중에는 학급담임이 보관하다가 학년말에 담당부서에서 수합하여 보관합니다. 보관기간은 시도교육청의 "기록관리 기준표"에 따릅니다. 단위과제카드 (학생봉사 활동)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서도 이에 따릅니다.

Q&A 63. 학생의 봉사활동 내역을 나이스 입력 시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영역 중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중 가장 유사한 영역으로 넣어도 되나요?

- 영역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가장 유사한 영역을 정합니다.

Q&A 64. 한국학교(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한가요?

- 전출과 전입으로 처리하는 한국학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합니다.
  - 한국학교 현황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한국학교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인정 유학으로 한국학교 재학을 하였거나 한국학교 재학이 아닌 해외 거주시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한국학교 재학은 전출·전입으로 처리하지 않음.

Q&A 65. 한 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봉사활동은 나이스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 연계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는 10분, 5분단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므로 1시간 미만의 실적이 연계될 수 있으나, 나이스에서는 1시간미만의 경우 입력되지 않습니다.

-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단 동일 기관의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합니다.

Q&A 66.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신청 활동 후 나이스로 연계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야 하는 경우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은 실적 연계의 일련의 과정(신청→실행→전송→반영)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실적 연계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 시 학생에게 실적을 전송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여 실적 연계(신청→실행→전송→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실적 연계 사이트의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계획서 제출 생략)
  - 실적 연계 사이트의 전송이 실패한 경우 : 전송 실패 확인
  - 실적 연계 사이트 전송 후 봉사활동 내용 수정하여 재전송하여야 하는 경우 : 재전송 불가
  - 학년도가 경과하여 과거 학년도 전송이 불가한 경우 : 전송 불가

Q&A 67. 전출입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는 어느 학교에서 보관하여야 하나요?

-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과 실적 자료를 전입교로 전송(송부)하고 입력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합니다.

Q&A 6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학교'와 '개인'활동은 어떻게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합니다.
  봉사활동 계획의 주체와 확인서 발급의 주체가 학교라면 '학교'로 입력합니다.

Q&A 69. 교육계획에 의한 사전 봉사교육은 어떤 봉사활동 영역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 사전교육 이후 실시된 관련 봉사활동의 영역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중 선택하여 입력하며. 선택이 애매한 경우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만약, 사전교육 이후 관련 봉사활동이 없다면 사전교육은 '캠페인활동'으로 입력합니다.

Q&A 70. 헌혈 실적 입력 시 전혈, 성분헌혈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하나요?

- 전혈, 성분헌혈 모두 동일하게 헌혈로 적용되므로 구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Q&A 71.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봉사활동내용은 몇 자까지 적을 수 있나요?

- 개별 봉사활동마다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은 학교/개인 구분 포함 30자, 봉사활동 내용은 250자까지 기재가 가능합니다.

Q&A 72. 실적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 봉사활동 확인서의 활동내용에 오타, 맞춤법 오류, 글자 깨짐(, &apos, &gt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 활동 내용이 아닌 내용, 특정 행사명 등은 담임교사가 사실관계 확인 후 수정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 자주 묻는 질문

1365 자원봉사포털 관련 문의

Q&A 1. 봉사활동을 했는데 실적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봉사활동한 수요처에서 실적 등록 후 지역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 승인 처리까지 완료되어야 봉사자의 실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 수요처로 문의하여 실적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A 2. 아이디가 여러 개인 경우 하나로 합칠 수 있나요?

- 소속 지역자원봉사센터로 전화하여 아이디 통합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 연락처는 홈페이지 하단의 "문의전화 안내"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A 3. 개명을 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명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지역자원봉사센터 담당자가 주민등록본 초본(개명 전, 개명 후 이름 기입 必)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성명)를 변경 처리해드립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원봉사센터에 팩스로 주민등록본 초본(개명 전, 개명 후 이름 기입 必)을 송부하여 확인과정을 거친 후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A 4. 봉사참여 신청을 했는데 계속 접수 중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수요처에서 승인을 하여야 신청이 됩니다.
  - 봉사참여를 신청한 수요처 또는 소속 지역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 연락처는 홈페이지 하단의 "문의전화안내"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A 5. 연계결과가 나눔포털연계 미동의 또는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나의 자원봉사-회원정보관리-자원봉사활동 부가정보" 메뉴에서 봉사실적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항목에 동의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와 보안문자를 입력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동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면"나의 자원봉사-회원정보관리-자원봉사 활동 부가정보" 메뉴에서 "정보제공 재동의 하기" 버튼을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실명인증 및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Q&A 6. 작년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NEIS) 연계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 나이스 연계는 당해 학년도 실적(3월~ 차년 2월)만 조회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 이전 학년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현재 학년 교사에게 인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Q&A 7.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연락처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 1365 자원봉사포털에 접속 후 하단의 "문의전화 안내"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VMS 자주 묻는 질문

Q&A 1. VMS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VMS는 Volunteer Management System 의 약자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1978년 '사회봉사안내소(도움의 전화)'를 시작으로 전국 14,000여개소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단체에서 87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1. 기준)

- VMS 봉사활동 유형
  - 재가봉사 : 복지소외계층 등 수혜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생활지원, 교육지원, 정서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시설봉사 : 복지관, 생활시설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생활지원, 교육지원, 정서지원, 사회활동지원, 여가선용, 취업지원, 업무보조, 시설정비, 각종 행사보조 등)
  - 전문봉사 : 기술, 기능 등 전문적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봉사서비스 제공 (전문상담, 의료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외국어지원 등)
  - 지역사회봉사 :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는 봉사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개선, 환경보호, 교통편익증진, 예술, 문화, 생활체육, 민원안내, 행정지원, 시민운동 및 조직 활동 등)
  - 해외봉사 : 동남아, 아프리카 등 최빈개도국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분야, 기술 분야, 농림·수산분야, 보건·의료분야 등)

- 학생 봉사활동 유의사항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기준은 각기 상이하므로 봉사활동 참여 및 실적 인증시 사전 확인 필요

  ※ 봉사활동 참여 시 본인 확인 등을 위한 학생증 등 지참 필수

2. 회원정보를 검색하여 아이디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이디 패스워드는 홈페이지 내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시 성명/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만일 성명 기재 오류로 회원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컴퓨터 이용에 제한이 되시는 분에 한하여 메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한 신분증/여권 등의 자료를 vms@ssmkorea.or.kr 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09:00~18:00 업무시간 내)

- 아이디 변경의 경우 실적등록을 위해 기관에서 임의 등록한 연번(숫자) 아이디만 1회에 한해서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신 경우 아이디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VMS에서의 실적 출력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적인증서는 VMS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 인증서 발급에서 가능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PDF 파일 저장과 프린터 출력으로 나뉘어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실적을 한 번에 출력 시 인증서발급(센터전체)을 이용해 주시고 개별실적 출력 시 실적 목록의 발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관공서, 도서관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해당 기관들의 방화벽 차단으로 정상적인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봉사를 진행한 기관에 연락하시어 실적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요청 후 메일로 송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인증 칸에 입력이 불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법정대리인 인증은 14세 미만 자녀 휴대폰이 아닌 보호자의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및 이름 란에 직접 입력이 아닌 휴대폰 인증 진행시 성명 및 휴대폰 번호는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보호자의 휴대폰 인증 완료 시 법정대리인의 관계란에 관계 기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명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2018년 1월 8일 VMS 개편으로 봉사자가 직접 홈페이지 상에서 개명절차가 진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방법은 VMS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인증으로 개명 진행 시 오류문구가 발생하는 부분은 실명인증기관의 정보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며 해당 문구 발생시 1600-1522 나이스신용평가 전화 > 0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실명정보등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A 6. 영문 증명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영문증명서는 시스템 상 자동 발급이 어려우며 봉사하신 기관에 연락하시어 영문증명서 발급 요청을 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영문증명서 위치 : VMS 홈페이지 > 알림정보 > 자료실 > 3페이지 38번 사회봉사활동인증서(영문) 서식 이용 요망

Q&A 7. 회원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 회원 탈퇴는 VMS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메뉴 확인이 가능하며 회원 탈퇴 시 봉사자의 모든 개인정보 및 봉사실적은 소멸됩니다. 더불어 소멸된 실적은 복구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여 회원탈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청소년 자원봉사 Dovol(두볼) 자주 묻는 질문

Dovol(두볼) 관련 문의

Q&A 1. 봉사활동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봉사활동 신청 취소는 [마이페이지]-[봉사활동 관리]-[봉사활동 신청내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취소의 경우 기관에서 활동 등록 시 설정해 놓은 신청 취소기간 내에는 취소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어 직접 취소가 가능하지만 신청 취소기간을 경과할 경우 사이트에서 취소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활동 상세정보에서 신청 취소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A 2.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신청내역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처리가 되나요?

- 이미 활동을 한 봉사활동이 신청내역에 있다면 아직 기관에서 완료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일 완료 처리를 하는 기관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짧게는 1~2일, 기관 사정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완료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활동을 한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완료처리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A 3. 봉사활동 신청 가능 개수가 3개인데 저는 2개 밖에 신청이 안 됩니다. 신청 개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 가능개수에 제한이 생긴다면 다음의 경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내역에 이미 활동한 봉사활동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신청목록에 남아 있는 경우
   →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완료 처리를 요청해주시면 신청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2. 과거 봉사활동 불참으로 인한 신청 가능개수 차감되어 복구 되지 않은 경우
   → 과거 불참한 이후 봉사활동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개수가 복구 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참여하면 차감된 봉사활동 신청가능 개수는 자동 복구됩니다.
   ※ 1회 불참→신청 가능개수 1개 감소→봉사활동 1회 참여→신청 가능개수 1개 복구
   (신청 가능개수 총 3개)

Q&A 4. 봉사활동 신청 후 참여하지 않아 삼진아웃에 걸려 봉사활동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풀리나요?

- 우선 삼진아웃의 경우 3회 연속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최종 불참처리 기준일로부터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회~2회 불참까지는 다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신청가능 개수를 복구할 수 있으나 3회를 연달아 불참하는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A 5. 봉사활동을 신청하려는데 학교급(초, 중, 고, 대, 학교 밖)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모집하는 학교급과 회원정보의 학교급이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신청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의 학교급을 확인한 후 본인의 학교급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본인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보변경] - [부가정보]에서 학교급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단, 학교급을 변경하는 경우 학교 정보도 함께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Q&A 6. 로그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우선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소문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청소년 자원봉사 Dovol(두볼) 사이트는 대소문자 구분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그래도 안 되는 경우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비밀번호 찾기 시 만 14세 미만으로 가입했던 회원의 경우이거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경우 휴대전화 인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인증을 통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Q&A 7. e청소년을 장기간 미사용 했더니 휴면상태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

- 휴면해제는 휴면상태 안내 페이지의 개인 정보 인증을 통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휴먼해제는 주민번호 인증 후 1회 로그인을 해야 휴먼 해제가 완료됨)
  다만, 청소년이 인증을 해야 할 경우라면 휴대폰 인증이 아닌 주민번호 인증을 통해 휴면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A 8. 회원 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제가 다니는 학교가 검색이 안 됩니다. 학교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학교가 신설하였거나 2개 이상의 학교가 통합된 경우, 또는 학교명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검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A 9.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 [마이페이지]-[봉사활동 관리]-[봉사활동 참여내역]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봉사활동 영역이 기타활동으로 등록되어 출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출력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e청소년 안내]-[설치프로그램]에서 리포트 뷰어와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설치
2. [e청소년 안내]-[게시판]-[공지사항]에서 '확인서 출력 시 오류 방법 안내'를 확인
3.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출력이 안 된다면 해당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문의 요망
   (단, 개인정보정책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기는 프로그램 설치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A 10. 활동 터전에서 하는 봉사활동과 동아리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활동 터전은 봉사활동 기관이라는 뜻으로 터전에서 등록한 봉사활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동아리의 경우는 동아리 회원만 해당 봉사활동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해진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만약 동아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연락하시어 회원 모집 시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연계 문의

Q&A 11. 1365 자원봉사포털로 Dovol(두볼)의 실적을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365 자원봉사포털로 Dovol(두볼) 실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우선 1365 자원봉사포털과 Dovol(두볼)에서 실적 연계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의 경우 [로그인]-[나의 자원봉사]-[회원정보 관리]-[자원봉사활동 부가정보]-[봉사실적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동의]에서 연계 동의를 해주셔야 하며, Dovol(두볼)의 경우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있는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 버튼을 통해 연계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초 1회 동의 후에는 봉사활동 실적(2016. 1. 1. 이후에 한 봉사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전송되며, 전송 소요시간은 시스템 상황에 따라 평균 1일~2일 정도 소요됩니다.

Q&A 12. 저는 Dovol(두볼)만 사용하는데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를 하려면 1365 자원봉사포털에도 가입을 해야 되나요?

-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시스템(나이스, NEIS)으로 실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를 해야 합니다.
  연계하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Dovol(두볼)과 동일한 인적사항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Dovol(두볼)과 1365 자원봉사포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동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Q&A 13. 오래 전에 연계 동의하였는데도 계속해서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계 확인이 가능한가요?

- 다음과 같은 사항은 몇 가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동일한 날짜에 Dovol(두볼)과 1365 자원봉사포털에 따로 신청한 봉사활동 시간이 겹치는 경우 (ex. Dovol(두볼) 10시~12시, 1365 자원봉사포털 12시~14시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12시가 겹치므로 시스템 상에서는 1건을 허위 봉사활동으로 인식) 실적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1365 자원봉사포털에 아이디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전송이 안 될 수 있으므로 1365 자원봉사포털측에 문의하여 아이디 개수를 확인해 주시되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디는 삭제하신 후 연계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봉사활동 완료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전송은 기관에서 완료처리 시점 이후에 전송이 시작되므로 이를 기관에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4. 1365 자원봉사포털에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로그인하여 [나의자원봉사]-[회원정보관리]-[자원봉사활동 부가정보]에서 동의해 주신 후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로 연계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사용하고 있는 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와 Dovol(두볼)에 연계 동의가 되어 있는 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가 다를 경우 전송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재 연계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A 14. Dovol(두볼)과 1365 자원봉사포털을 연계하면 나이스(NEIS)로 바로 넘어가나요?

- Dovol(두볼)과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를 함으로써 나이스(NEIS)까지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스(NEIS)로 전송하려면 우선 Dovol(두볼)에서 전송된 봉사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한 후 1365 자원봉사포털 메인화면의 [자원봉사 실적 나이스 연계] 메뉴를 통해 나이스로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자동이 아니므로 직접 전송해주셔야 합니다.

Q&A 15.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결과에 '수신'과 '전송불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우선 '수신'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하여 활동이 완료된 봉사활동 실적이 Dovol(두볼)로 전송된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수신'한 실적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송불가'는 말 그대로 1365 자원봉사포털로 전송자체가 불가한 봉사활동이며 이는 Dovol (두볼)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의 영역이 해외봉사활동, 기타활동(봉사 외 활동)인 경우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에서 인정되지 않는 활동이므로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봉사활동인데 '전송불가'라고 표시된 경우라면 활동한 기관 선생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A 16. 오늘이 학교에서 봉사활동 실적 등록 마감인데 1365 자원봉사포털로 봉사활동 실적 전송을 바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로 실적 전송은 자동 전송 시스템으로 정해진 시간에 1일치 봉사활동을 한꺼번에 1365 자원봉사포털로 보내고 있어, 바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급하게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Dovol(두볼)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한 후 학교에 직접 제출하면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수기로 나이스(NEIS)에 입력을 하실 수 있으므로 선생님과 상의 후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A 17. 봉사활동 실적 중 일부는 1365 자원봉사포털로 '전송성공'인데, 일부는 '미전송'입니다. 오류 사유는 무엇인가요?

-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를 동의한 후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아이디를 변경하셨거나 시스템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만 전송이 되고 일부는 전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장